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15일, 박용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용갑의원)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선유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관리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관리비의 구성 항목은 공동주택의 유형이나 관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개별 사용량에

다른 공공요금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요금 감면제도와 지원 대상 및 목적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 중 실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과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감면제도와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동일한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조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